접수번호	이의신청 2018-4	결정일	2018.4.19.
제 목	한정상속 승인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05두9491 참조),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7두30740 참조),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조심 2017지0561 참조).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이유	아래 참조		

1. 처분요지

신청인은 피상속인 ○○○이 0000.0.0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경상북도 ○○○ ○○○ ○○○ 000-0번지 ○○○○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0000.0.0. ○○○○법원 ○○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신청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 합계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0000.0.00. 부과고지 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로 상속이 되므로 부득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0000.0.0. ○○○○법원 ○○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며,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경우 신청인은 전혀 상속지분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상속'은 취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에서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0000.0.0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이며, 「민법」상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도 아니어서 상속이 개시된 0000.0.00. 신청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한정상속승인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청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출한 ○○○○법원 ○○지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 내용>

사 건	청구인	피상속인	주 문	상속재산목록
0000○○00 상속한정승인 (0000.0.0.결정)	○○○ ○○○ ○○○	○○○ (0000.0.00.사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0000.0.0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1.적극재산(피상속인 소유 재산) - ○○조 ○○○지붕 ○○○○ 00㎡(미등기 상태임) - ○○○○○○○○ ○○ 000,000원 2.소극재산(피상속인의 채무) - ○○○○○○○○ ○○○○○ 00,000,000원 - ○○○○○○○○ ○○○○○ 000,000,000원 - ○○○○○○○○○○ ○○○○○ 00,000,000원

(2) 신청인은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0000.0.00.자 ○○○○에 상속한정승인공고를 하였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 사본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0000.0.00.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

다고 보아 취득세 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 합계 000,000원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나타난다.

(4)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채권자들이 경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8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고 하고 있으며,

비록 신청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0740 판결 참조)고 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0000.0.00.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0000.0.0. ○○○○법원 ○○지원에 수리 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상속개시일(0000.0.00.)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조심 2017지0561, 2017.7.19.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관련규정과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참고 자료(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